●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3-015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3-007호) 낚시어선 팀루비나호·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팀루비나호·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경** *** *** *** **)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조종자로 승선한 고무보트가 2021년 9월 10일 06시 16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시루섬 북서쪽 약 0.43해리 해상에서 팀루비나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팀루비나호 측이 감속하지 않고 피항 동작을 하다가 귀하 등이 탄 고무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 항행이 잦은 곳에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레저기구 등을 조종할 때 선박을 조종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으면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등 평소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항법을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